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8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이형석·김영배·김영진

박재호 · 양기대 · 고용진

백혜련 · 김경협 · 오영환

우원식 · 김주영 · 김민철

김수흥 · 김진표 · 서영교

홍영표 • 이해식 • 정일영

박완주 · 한병도 · 김성주

오영훈 · 임호선 · 양경숙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2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 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	
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	
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	
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	
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	2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u>「지방세법」</u>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	<u>은 항 제4호가목</u>
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	
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	
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	제2조(적용시한)
호의 개정규정은 <u>2022년 12월 3</u>	2026년 12월 31
<u>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u>일</u>